

[보도자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문의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010-2995-0883) 이명란 인권운동사랑방 (010-9120-1617)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act2017@gmail.com
제목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한변호사협회 조현욱 협회장 후보에 공개질의 조현욱 후보는 평등법 제정 및 차별금지 원칙에 대한 입장 밝혀야
발행일	2021년 1월 21일 (총 1페이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한변호사협회 조현욱 협회장의 후보에 공개질의
**조현욱 후보는
평등법 제정 및 차별금지 원칙에 대한 입장 밝혀야**

1. 인권과 평화의 역사를 되새깁니다.
2.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오늘(1.21)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으로 출마한 조현욱 후보를 대상으로 평등법 제정과 차별금지 원칙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3. 2020. 6. 30.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임을 밝히며 「평등법안」 제시와 함께 국회가 평등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미 2020. 6. 29 정의당 창혜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상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평등법안」 발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3. 1월 25일로 다가온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의 선거에 출마한 총 5명의 후보 중 조현욱 후보는 2017. 5. 부터 2020. 12. 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을 역임하며 평등법 제정 의견 표명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 발의를 준비

대한변호사협회 조현욱 협회장 후보 대상 평등법 제정 및 차별금지 원칙에 대한 질의서

조현욱에대한변호사협회회장의후보에게질의합니다.

- 귀후보는2017. 5.부터2020. 12.까지의국가인권위원회비상임인권위원을역임하셨습니다 (2017. 6. 비상임위원으로임명. 2020. 6. 연임되었으나같은해의2. 사임).
- 2020. 6. 30. 국가인권위원회는의평등법제정은의더이상예를추우없는우리사회양면의과제”임을명확히하며, 국회에의대하여의평등법제정을요구하는의견표명을의하고의「평등의차별금지에의관한법률안(이하의평등법안)을의제안하셨습니다. 귀후보께서는의비상임인권위원으로서의국가인권위원회의원위원회에의참석하여의의견표명을의결하셨습니다.
- 한편의후보께서는의2020. 12. 13. ‘복음법률가회’에서의발표한의이상민의위원이의의준비하는의평등의차별금지에의관한법률안의의위험성의점토의및복음법률가회의의반대의성명서>(이하의‘반대의성명서’)에도의내용의참수자 25명의중의명으로의름을의리셨습니다.
- 위의반대의성명서’는의더불어민주당의이상민의위원이의말의를준비하는의것으로의알려진의「평등의차별금지에의관한법률안」과의관련하여, “이의위원의평등법안을의점토한의복음법률가회의의속의법률학자, 법률실무가들은의정의당의차별금지법안과의국가인권위의평등법안과의본질적으로의동일한의이의위원의의평등법안에의단호히의반대하며의법안발의를의추각의추소하기를의강력히의요구한다”는의입장을의밝혔습니다. 즉, ‘반대의성명서’는의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의견표명의의평등법의안에의반대하면서의와의본질적으로의동일한의이상민의위원의법안에도의반대한다는의입장을의밝힌의것입니다. 귀후보께서는의위의성명서가의문제삼는의국가인권위원회의의의견표명을의직접의결하신의위원임에도의불구하고의위의반대의성명서’와의입장을의함께의하셨습니다.
- 한편의반대의성명서’는의동성성행위나의성별변경행위는의선택할의수있는의인간의의위부적의행동이므로의가치관에의따라의찬반이의나날의추박에의없으므로의차별금지사유에의포함될의수없다. 성적지향이나의젠더정체성은의세계인권선언이나의헌법에서의인정되는의보편적의인권으로서의차별금지사유가의결코의아니다”라고의원명함으로써의성적지향의및성별정체성을의이유로의한의차별금지원칙’을의인정할의수없다는의주장’또한의하고의있습니다. 성적지향은의「국가인권위원회법」에의형시되어있는의차별금지사유(「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의제3호)이며, 이에의따라의국가인권위원회는의2001년부터의성적지향의및성별정체성을의이유로의하는의불합리한의차별행위를의규율해오고의있습니다.

니다. 귀후보는 의국간 의국가 인권위원회에 상임 인권위원으로 활동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지향이나 젠더 정체성은…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차별금지 사유가 결코 아니”라는 위헌반대의 성명에 참여하셨습니다.

- 이와 같이 귀후보의 의국가 인권위원회에 상임 인권위원으로서의 활동과 의국음 법률가 회의 법률가로서의 활동이 의서로 의순됩니다. 이에 차별금지법 제정 연대는 아래 사항에 대한 귀후보의 입장을 의문합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의견표명 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따라 보장되는 ‘성적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 원칙’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변호사는 의기본적 인권의 의용화와 의사회 정의 의실현’을 의그 의명의로 의하며(「변호사법」 제1조의 제1항, 변호사 윤리 강령 의제1항), 대한변호사 협회는 의기본적 인권의 의용화와 의민주적 의기본 질서의 의확립’을 의그 의립 목적으로 의하고 의있습니다(대한변호사 협회 의회칙 의제2 조 의제1 호). 대한변호사 협회 의의립 목적을 의충실히 의구현 할 의수 의있는 의대한변호사 협회 의협회 장이 의선출 되기를 의라 의며 의본 의의 를 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